

지역발전교부세 및 성과·시책수요 신설

서정섭 / 신두섭

2008.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목 차 >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범위와 방법 / 2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와 쟁점 / 3

1. 현행체계의 특성 / 3
2. 주요쟁점과 현안과제 / 7
3. 신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개선·개편 방향 / 8

III. 지역발전교부세 도입의 타당성 검토 / 9

1. 지방교부세 개선 관련 선행 검토 / 9
2. 지역발전교부세 도입의 필요성(논리) / 13
3. 지역발전교부세 도입방안 / 15

IV. 도로사업보전분의 발전적 활용방안 / 18

1. 도로사업보전분 활용으로 전환한 배경 / 18
2. 도로사업보전분 개요 / 18
3. 도로사업보전분 기한연장 검토 / 21
4. 도로사업보전분 기한연장과 활용 / 26

V. 성과·시책수요의 신설방안 / 32

1. 특별교부세 운영실태 / 32
2. 특별교부세제도 내 성과·시책수요 신설방안 / 34

VI. 정책건의 / 37

- <부록>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 개혁 내용 / 38

< 표 목 차 >

- <표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내용종합 / 4
- <표 2> 지방교부세의 요소별 재원규모 / 5
- <표 3> 신정부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향 / 8
- <표 4> 소요액 판단현황 / 19
- <표 5> 실태조사결과 현황 / 20
- <표 6> 도로보전분 집행현황 / 22
- <표 7> 도로보전분 활용방안 모색 관련 주요 쟁점 및 검토결과 / 31
- <표 8> 특별교부세의 구성 및 재원규모(2007년도 기준) / 33
- <표 9>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지원현황 / 34

< 그림목차 >

- <그림 1>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체계 / 3
- <그림 2> 보통교부세 산정(재원부족액 보전분) / 9
- <그림 3> 보통교부세액의 구성('08년도 기준) / 9
- <그림 4> 지역발전교부세의 개념도 / 15
- <그림 5> 현행 지방교부세제도 구조 / 18
- <그림 6> 특별교부세 운영방식 개선 / 36

I. 서론

1. 연구목적

- 신정부의 재정분권 정책방향은 1) 자치단체의 역량과 역할의 강화, 2) 경쟁과 성과 중심의 제도 운영,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 4) 맞춤형 제도 운영과 행·재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는 지방재정제도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개선을 계획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제도 관련 개편·개선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기업유치,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 이러한 계획하에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역경제 수요비중을 상향조정 할 예정이며, 특별교부세의 운영을 현재의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에 성과·시책수요를 신설하고자 하며,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일부재원을 지역발전교부세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또한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하나인 예산절감 실적을 포함하고자 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개선·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은,
 -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에 재정지원과 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 완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특정목적사업에 대한 사용의 어려움이 있고, 성과와 경쟁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에도 미흡하여
 - 지방교부세의 전반적인 개편으로 성과와 경쟁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교부단체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등에서 비롯됨

- 특히, 이중에서 지역발전교부세의 도입 및 특별교부세의 성과·시책수요신설의 중요성은,
 -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기업유치, 고용창출, 지역차원의 SOC 확충 등을 통해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

- 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운영토록 하고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년도에 반영하는 등 성과와 경쟁을 통한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도입 및 신설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정부정책인 지역발전교부세 신설 및 성과·시책수요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범위와 방법

- 본 연구의 핵심은 지역발전교부세의 도입 및 성과·시책수요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과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 지역발전교부세 및 성과·시책수요의 도입논리와 각각의 방안 검토를 핵심으로 함
 - 지역발전교부세의 경우 도입논리와 방안, 그리고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두며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성과·시책수요는 특별교부세제도 운영에 신설함이 타당한가에 초점을 두어 검토할 예정이며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 현행 지방교부세제도 운영의 미흡한 부분 검토
 -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교부세제도 연계운영 방향 검토
 - 외국, 특히 일본의 최근 지방교부세제도 개혁내용의 검토 및 벤치마킹
 - 본 과업과 관련한 쟁점 및 각각의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진, 정부, 전문가 워크숍 등을 진행
 - 제도 신설 취지 및 각각의 방안에 대한 지방설명 및 의견수렴
 - 관련 부처 설명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신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향후 제도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는 정책대안에 대하여 학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중앙부처 등의 의견수렴에 중점을 두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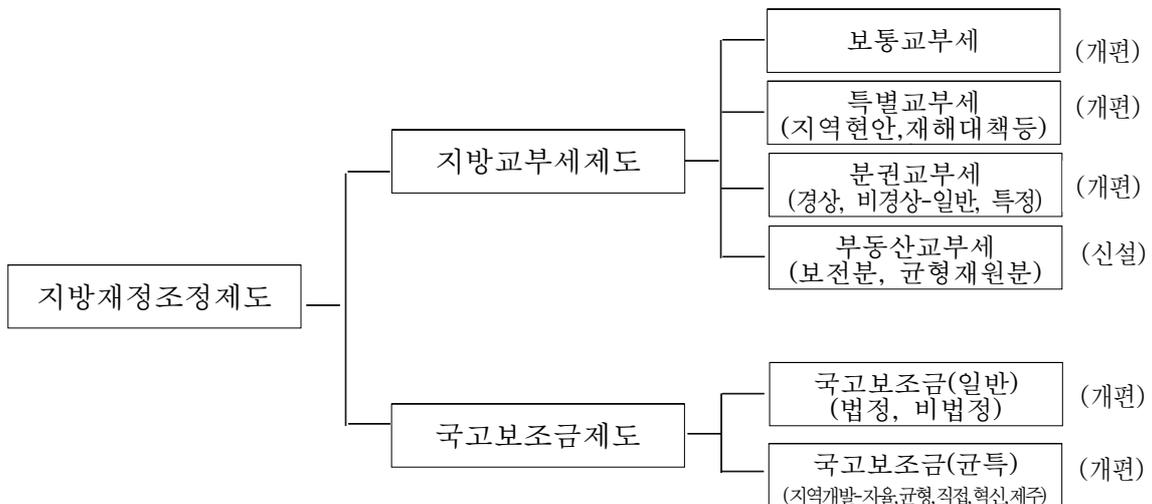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와 쟁점

1. 현행체계의 특성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2005년에 기존체제를 변화시키는 구조개편을 하였음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의 체제이나 각 제도별로 다양한 목적, 방법, 내용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제도 내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지방양여금도로보전분 등 여러 제도가 함께 운영되며, 이들 각각도 다시 목적별로 구분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4개의 종류로 구분됨. 지방교부세 재원의 법정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며, 이의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내국세 총액의 0.94%), 지방양여금도로보전분이 운영되며, 부동산교부세는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됨.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지방양여금도로보전분은 지방교부세 법정율 19.24%내에서 매년 8,500억원이라는 일정한 재원으로 운영됨.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제도 내에서도 별도재원으로, 지방양여금도로보전분은 보통교부세로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림 1>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체계



- 지방교부세제도가 운영목적, 배분방식에서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데 중심을 두며, 수입중심에서 차츰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배분되고 있음
- 참여정부 이후 복지정책의 확대로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운영특성이 있음. 이는 정부 정책을 반영한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으로 2005년도 당시 국가정책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구조개편 되어 운영되고 있음
- 개별제도 간 기능중복, 한시운영, 별도운영 등으로 다소 복잡한 체제로 운영되며, 어떤 제도는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며 운영되는 특성도 있음

<표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내용종합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근거 법령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5장)
목적	-재원보전 -불균형 시정	-특별재정 수요대응	-지방이양 대상사업 재원보전	-재원감소분 보전 -지방재정균형	-특정사업 지원	-균형발전사업 통합추진지원
운영 특성	-수요 대비 수입 부족액 배분	-2개 수요	-3개 수요 -한시운영	-국세 전액 지방 배분	-법정, 비법정 운영 -부처별 운영	-4개 계정 -3개 수요 -통합운영
재원 구성	-내국세18.3%+도로보전분 8,500억원(특정,한시운영) -재원의 96%	-도로보전분 -재원의 4%	-내국세의 0.94%	-종합부동산세	-국가의 예산	-주세, 특별회계 전출금 등 다양
용도	-없음	-세부지정	-포괄, 세부지정	-없음	-세부지정	-포괄, 세부지정
배분 방법	-재정부족액 기준 -공식배분	-지역현안, 재해대책 -심사배분	-재정수요 액기준 -공식배분, 심사배분	-보유세 감소분 보전과 공식배분	-신청주의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운영	-계정별 배분 방식 상이 -공식, 심사배분
재원 성격	-일반재원	-특정재원	-일반,특정 재원	-일반재원	-특정재원	-특정재원
재원 (‘06년)	168,622억원 (43%)	7,379억원 (2%)	10,024억원 (3%)	10,200억원 (3%)	124,249억원 (33%)	59,067억원 (16%)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2007, pp. 31-32.

- 지방교부세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교부세가 추가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최근 매년 10% 이상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경기위축시기에는 총액이 감소한 경우도 있음(1999년, 2002년, 2004년도)
 - 법정교부율 인상시기(2000년, 2005년)에는 20~30% 증가함
 - 2007년~2008년도의 경우 10%이상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규모증대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음

<표 2> 지방교부세의 요소별 재원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증액교부금	
1992	3,927,749	3,533,726	353,373		40,650	
1993	4,413,085	4,011,896	401,189		-	
1994	4,724,569	4,295,062	429,507		-	
1995	5,484,226	4,985,661	498,565		-	
1996	6,377,734	5,797,940	579,794		-	
1997	6,798,732	6,142,666	614,266		41,800	
1998	7,039,226	6,353,842	635,384		50,000	
1999	6,710,770	5,782,518	578,252		350,000	
2000	8,266,546	7,468,678	746,868		51,000	
2001	12,288,992	11,119,539	1,111,953		57,500	
2002	12,259,425	10,884,910	1,088,490		286,025	
2003	14,910,674	12,238,522	1,223,852		1,448,300	
2004	14,469,054	13,012,867	1,301,287		154,900	
2005	19,484,517	17,927,570	711,566	845,381	제도 폐지	581,357
2006	20,441,392	18,691,488	743,396	1,006,508	-	1,717,900
2007	22,624,220	20,692,123	826,756	1,105,341	-	2,881,400
2008	25,779,700	23,573,400	946,800	1,259,500	-	2,869,550

주) ① 2006년까지는 최종예산(추경분 포함), 2007~2008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② 2004년까지 증액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액

③ 2004년까지는 보통교부세 10/11, 특별교부세 1/11, 2005년부터는 보통교부세 96%, 특별교부세 4%임

④ 2005년 이후의 보통교부세에는 도로보전분 850,000백만원이 포함됨

자료 :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2007년도 지방교부세산정해설, 2007 및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사회투자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종합대책(2007.5.17), 2008보통교부세 운영

- 2008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25.8조원(부동산교부세 제외) 정도되며, 부동산교부세는 2.9조원 정도임. 보통교부세는 23.6조원 정도이며, 특별교부세는 0.9조원, 분권교부세는 1.3조원 정도임

2008 지방교부세 재원규모(당초예산기준)

○ 총 규모	25조 7,797억원
※ 2008내국세총액 133조 9,901억원('06년 정산분 8,192억원)의 19.24%	
•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와 도로보전분 제외 교부세총액의 96%+8,500억)	23조 5,734억원
┌ 재정부족액 보전분(96%)	22조 7,234억원
└ 도로사업 보전분(별도)	8,500억원
• 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와 도로보전분 8,500억 제외 교부세총액의 4%)	9,468억원
• 분권교부세(내국세총액의 0.94%)	1조 2,595억원

※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예산은 2,869,550백만원임 ⇒ 부동산교부세

- 2008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의 20% 정도이며 지방이전재원의 50%를 넘음

2008 지방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총 규모	124조 9,666억원 (100%)
• 자체재원	77조 1,471억원 (61.7%)
┌ 지방세	43조 5,497억원 (34.8%)
├ 세외수입	30조 1,004억원 (24.1%)
└ 지방채	3조 4,970억원 (2.8%)
• 의존재원	47조 8,197억원 (38.3%)
┌ 지방교부세	24조 1,296억원 (19.3%)
└ 국고보조금	23조 6,899억원 (19.0%)

2. 주요쟁점과 현안과제

○ 체계측면

- 구조설계의 복잡성, 형평성 강조와 제도별 정체성 취약, 정책적 고려 강조, 재정효율성 위한 인센티브 장치 복잡

○ 중앙·지방갈등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과 재원보전 미흡, 지방비부담가중으로 재정경직성 초래, 재정자율성 증대와 재정효율성 요구, 일부 지방이양사업 국고환원 등

○ 제도간 충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광역경제권특별회계), 지방교부세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제도 신설(검토), 복지교부세 신설(현행 분권교부세제도) 및 사회복지교부금(사회복지관련 보조금의 포괄보조금), 부동산교부세의 모호성

○ 현안과제

- 분권교부세제도 시한도래(2009년), 지방양여금도로사업보전분 시한도래(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교부세제도 연계(정부정책), 교부율 2% 인상(공약사항)

○ 개별제도 이슈

- 보통교부세 : 측정항목 단순화, 자치구 배분, 불교부단체 이의, 낭비요인 존재 등

※ 현행 측정항목, 보정강화, 인센티브 등 운영(지역특성, 형평성차원)

- 지방양여금도로사업보전분 : 기한연장 요구(추진 중 사업 많음)
- 특별교부세 : 다소 임의성 및 배분 불투명, 규모 계속증가(검토 필요)
- 분권교부세 : 재원부족, 지방비부담 가중, 보통교부세 통합과 통합 시 문제발생, 국고보조금으로 환원(검토 필요)
- 부동산교부세 : 별도 운영 문제 등

3. 신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개선·개편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운영(수요 산정방식 등 개선)
 - 기업유치,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기능을 강화

- 보통교부세 수요조정은 '09년도에, 나머지는 방안마련 후 시행하고자 함

<표 3> 신정부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향

구분	개선 과제 및 내용				비고(관련 검토 사항)
보 통 교부세	○ 지역경제 수요비중 상향조정 - '09년, 24.9% → 30%				*09년 시행 *사회문화, 일반행정비 축소
	구분	일반행정	사회문화복지	지역개발	
	06	15.1조(33.3%)	13.9조(30.8%)	16.3조(35.9%)	
	07	17.5조(35.2%)	18.0조(36.2%)	14.2조(28.6%)	
	08	19.3조(35.1%)	22.1조(40.0%)	13.7조(24.9%)	
	증감	1.8조(△0.1%p)	4.1조(3.8%p)	△0.5조(△3.7%p)	
특 별 교부세	○ 성과·시책수요 신설 - 지역현안, 재해대책(현재) → 지역현안, 재해대책, 성과·시책수요				*재원증가, 일정분 성과·시책수요분으로 확보 운영 *지역현안분은 개별사업보다 몇 개의 블록으로 하여 년초에 수요파악 포괄지원
부동산 교부세	○ 재원 배분기준 개선 - 재정여건 50%→30%(축소) - 예산절감 20%(신설) - 복지(25%), 교육(20%), 보유세규모(5%)(유지)				*잔여재원 배분시 예산절감 실적 고려 배분
지 역 발 전 교부세	○ 보통·분권교부세 재원 등으로 검토				*분권교부세 시한도래, 지방양여금도로사업보전분 시간도래와 사업 미 종료 *지방교부세 10%씩 증가 *일정분을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재원으로 활용

자료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Ⅲ. 지역발전교부세 도입의 타당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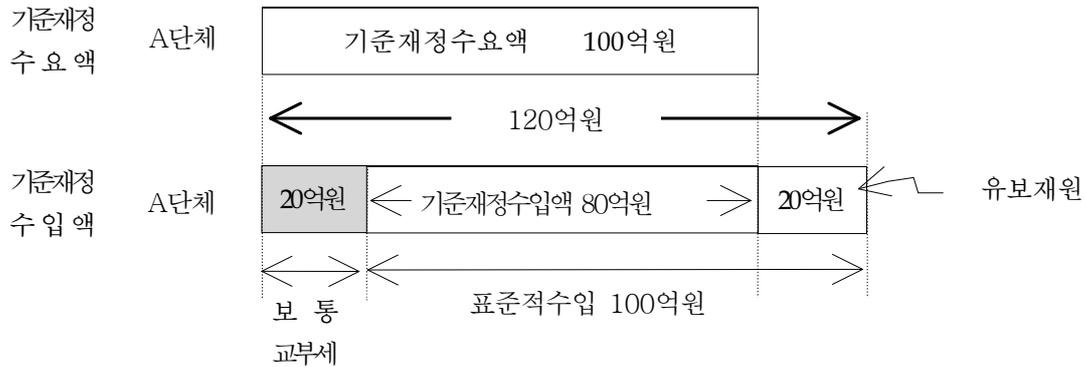
1. 지방교부세 개선 관련 선행 검토

1)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 재원부족분의 89.2%(2008년도 조정율)를 보전해 주어 10% 정도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일본은 교부기준액(수요-수입)의 도부현 99.6%, 시정촌 99.5%를 보전해줌
- 현재 보통교부세는 재원부족분과 도로사업보전분으로 구성되나 도로사업보전분은 '05~'08년도의 한시제도임
- 도로사업보전분(8,500억원)이 '09년 이후 재원부족분으로 통합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에서 기간연장을 요구함(도로사업 계획 대비 59% 정도만 시행되어 41% 정도의 사업이 남아있음)

<그림 2> 보통교부세 산정(재원부족액 보전분)



<그림 3> 보통교부세액의 구성('08년도 기준)

보통교부세 (235,734억원)	
재원부족액 보전분 (227,234억원)	도로사업보전분 (8,500억원)
	- '05~'08년 한시배분(기한 연장 요구)

○ 특별교부세

- 특별교부세의 비중 축소(9%→4%)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증가함(2008년도 9,468억원)

* 2000년도 특별교부세는 7,469억원

- 지역현안수요의 경우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 도로교량, 상·하수도, 교통 등 지역의 SOC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요청한 경우 심사하여 지원함.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개별사업보다 포괄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해대책수요의 여유분을 재정인센티브로 활용하나 재원이 불안정함
- 중앙-지방의 WIN-WIN 지원체제확립 및 지방의 성과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가 필요함(성과·시책수요 신설)

○ 분권교부세

- 2009년도까지 한시 운영한 후 보통교부세 통합예정이나 이의 대응 미흡
-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거나, 이양재원이 불충분하다는 문제 발생
- 국가사업성격, 지방의 과중한 부담사업은 국고환원이 검토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관련 보유세 및 거래세 감소분 보전 외 잔여재원(균형재원) 활용
- 기능의 정체성 부족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배분됨(잔여재원 활용의 특성이 없음)
- 잔여재원의 명확한 기능이 없으며 지방에 추가적으로 배분되는 재원임
- * 보통교부세 부족재원보전분 중 10% 정도의 미보전분을 대체할 정도의 규모임(2007년도 잔여재원은 17,298억원)

2) 국고보조금

○ 일반국고보조금

- 각 부처의 계획에 의거 사업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통합적 활용 곤란
- 국고보조금의 자금배정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년 말에 이루어져 사업추진

- 연기, 보조율의 현실성이 불합리한 경우(중앙, 광역)도 있음
-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의 경우 신청 유보 및 포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보조금)
 - 지역개발 및 사업육성 관련 사업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되며, 광역에 포괄지원, 국가직접사업, 공모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성 있음
 - 지역SOC, 도서·오지개발, 산업진흥 사업 중심
 - 관련사업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성을 도모하는 성과는 있으나 여전히 국고 보조사업의 특성(지방통제력,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유지하고 있음
 - 재원제약으로 지방상호간의 경쟁이 심하며, 예산신청과정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어 지방을 도와주는 재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음
 - 광역경제권 추진과 연계하여 운영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3) 자주재원(자체재원)과 재정운영

-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
 - 국가지원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운영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추진 곤란
 -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자주재원은 지방비 부담으로 충당)하나 국고보조사업은 개별적 사업으로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추진됨
 - 자체사업은 재정적인 이유로 소규모사업으로 분산 추진되어 특정이익집단의 수혜차원에서 이루어짐
 - 단체간 유사 동일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중복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국고보조금의 배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됨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포함)이 지연될 경우 사업이 연기됨
- 지역의 특수수요가 발생하는 단체(재정력이 높아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수혜가 적은 단체)
 -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에 있어서 수요보다는 재정력을 우선하여 배분하는 관계로 지방교부세 배분의 수혜가 적음

4)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다양한 논의 종합)

○ 특성

- 지방교부세 제도의 다양한 운영으로 복잡(모든 제도)
- 모든 제도운영에 형평화지수 사용(모든 제도)
- 제도도입 검토 미흡(분권교부세), 정체성 부족(부동산교부세)
- 한시적 운영 및 향후 전환(분권교부세, 도로사업보전분)
- 객관성, 투명성, 재원 안정성 부족 (특별교부세)

○ 현행제도의 재원성격

- 재원성격과 쟁점

<u>구분</u>	<u>성격</u>	<u>고려요소(쟁점)</u>
· 보통교부세(재원부족분)	: 부족재원보전	100% 보전
· 보통교부세(도로사업분)	: 특정사업추진	재원부족분 통합/연장
· 특별교부세(현안수요)	: ?	사업별, 임의/포괄, 투명
· 특별교부세(재해대책)	: 특정사업추진	운영, 잔여재원 불안정
· 분권교부세	: 이양사업추진	재원부족분 통합/국고환원
· 부동산교부세(보전분)	: 세수결합보전	지속운영 필요
· 부동산교부세(잔여재원)	: ?	추가지원(배분변화 심함)
· 국고보조금(일반,균특)	: 특정사업추진	칸막이식, 비효율, 보조율

- 재원지원의 특성 : 지방에 대한 부족재원 지원 및 특정사업 추진
- 재원운영상 부족한 점
 - 지방교부세 : 정책유도, 시급성, 효율성, 경쟁, 협력 및 통합 등의 미흡
 - 국고보조금 : 협력·통합, 합리적 보조율(기준보조율 고정됨) 등의 미흡

○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방향

- 보통교부세 : 재원부족분, 분권교부세(일부 국고 환원), 부동산교부세(보전분은 별도 산정) - **보전재원(100%보전 지향 여부)**
- 특별교부세 : 재해대책분, 성과시책수요(현안수요 일부) - **사업추진재원**
- 지역발전교부세 : 예) 도로보전분+특별교부세 현안수요일부+보통교부세 일부 - **축매재원(현행 재정운영의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는 방향 지향)**

2. 지역발전교부세 도입의 필요성(논리)

1) 정부정책 반영(유도) :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유치, 지역SOC조성 등

- 지역경제활성화는 시급성을 요하여 재정운영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 다른 제도에서는 이를 고려하더라도 수요산정에 반영되어 관련 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못함
- * 현재 사회복지 사업추진에는 분권교부세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교부세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하여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 일본의 경우 지역진흥비를 별도 산정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고, 기업유치 및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 재원 활용

2) 지방교부세 개편(시도)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지역발전교부세 운영

- 지방교부세운영의 문제점은 부족분 100% 보전 못함, 한시운영과 향후 방향 미설정, 정체성 모호한 상태에서 임의적 지원 내지는 추가적 지원 등임
- 재원성격 및 정책목적이 명확한 운영으로 재설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보통교부세(재원부족분 보전) 100% 보전 지향, 특정목적사업의 추진, 제도적 한계 내지는 지방재정운영의 문제 해결에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
- 재원부족분을 100%보전하는 보통교부세, 특정목적사업을 추진하는 특별교부세, 나머지 재원은 지방을 지원하는 지역발전교부세(가칭)로 운영
 - 지방교부세 전체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통폐합 및 국고환원을 하여 3유형의 지방교부세 체제로 개편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제도는 "1"항과 관련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3) 지방재정제도간 한계극복(융합) : 개별 제도를 연결하는 촉매재원 역할

- 중앙이 지방에 대하여 재원지원하는 제도간에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사업의 연계, 재원의 효율·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간, 자체사업간 등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과가 극대화되지 않거나 목표되었던 성과가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제도의 한계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운영에도 한계가 있음
 - 자율적 운영은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음
- 분리운영을 원칙으로 함에 따른 비효율의 발생을 제거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의 신설도 필요함
 - 분리운영 되는 제도를 상호 연결시켜 주는 촉매재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활동 지원, SOC기반 조성 등에서 필요함

4) 사업(군)간, 단체간 칸막이식 재정운영 변화(효율) : 협력·통합의 효과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부처별 보조사업(교부세 포함), 자체사업이 별개로 추진됨으로 연계(협력, 통합)가 적어 사업효과가 분산되거나 적음
- 자치단체간에는 동일사업이 추진되어 재원활용이 비효율적임
- 사업간, 재원간, 자치단체간 협력·통합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 및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재정적으로 필요함

5) 국가적 차원의 추가 재정지원(시급성 및 파급효과)

- 국고보조금이 적기에 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재원의 부담이 용이하지 않으나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이에 필요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 수요 및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여 이에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지역경제관련 사업의 시급성이 요하나 추가부담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대응하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제도가 필요함

6) 지방의 정책기획능력 배양(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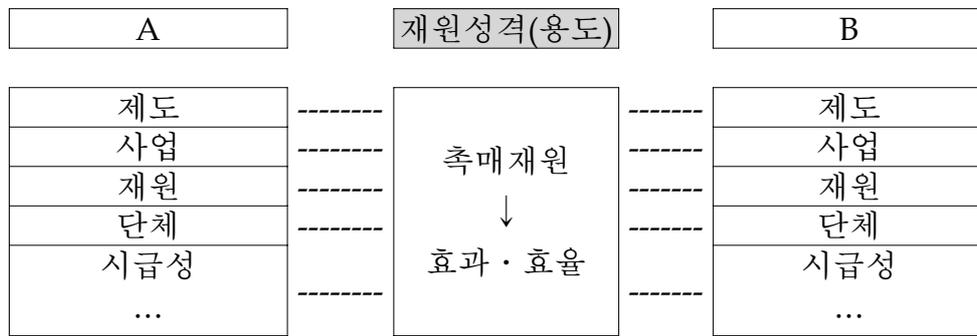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재원, 자체재원의 범위내에서 재정운영을 하다 보니 창의적인 정책기획능력이 미흡함
-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종합프로그램 등의 정책기획에 대한 지원제도 필요

3. 지역발전교부세 도입방안

1) 지역발전교부세의 개념 : 촉매재원

- 재원용도의 성격으로 연계·협력·통합의 촉매재원으로 활용
 - 제도간, 사업간, 재원간, 단체간, 시기간을 연결하는 촉매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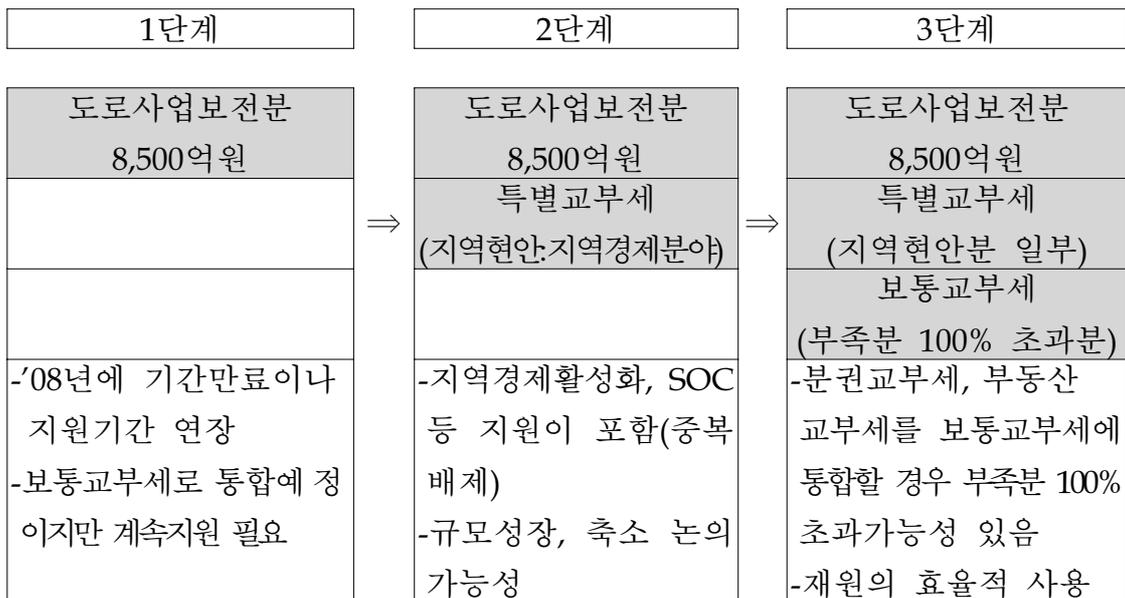
<그림 4> 지역발전교부세의 개념도



2) 지역발전교부세 도입방안 : 단계별 접근

- 단계별 접근으로 전체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개편 유도

<그림 5> 지역발전교부세의 개념도



○ 우선 지역발전교부세를 현행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지방교부세의 개편방향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보통교부세(당초) 10% 정도를 지역발전교부세로 활용함은 현재 부족분의 100%를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논리적, 현실적으로 타당성 부족함

3) 대상사업(지원대상) : 사업별 접근보다 재원성격으로 접근

○ 지역발전교부세 도입의 논의는 당초 지역경제활성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 지역SOC 투자를 염두하였지만,

- 지원사업으로 접근할 경우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교부세 등과 사업성격이 중복됨

○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포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제도적, 현실적으로 한계 및 장애요인들이 있으나, 이는 현 제도하에서는 지방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의 재정지원으로 접근해야 다른 제도와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지원 가능 대상사업군은 “위의 3가지 사업군”에 지역경제활성화 관련사업이 아니더라도 “복합추진사업”, 도로사업보전분으로 시작하는 점에서 “기존 도로사업 및 신규도로 사업” 등도 포함하여 사업군을 정함

○ 재원활용, 사업추진의 효과나 효율을 극대화하는 촉매재원으로 가능한 성격에는 지원이 필요함

※ 지원대상분야는 지방의 애로사항, 제도적 한계, 우수사례 등을 파악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운영방안 : 심사지원과 공식배분의 2원화, 광역단체 운영 중심

○ 지역발전교부세 재원을 1/2씩 2원화하여 공모에 의한 심사지원과 공식에 의한 배분으로 2원화

- 전액 심사지원은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액 공식배분은 타당성 결여(배분기준 설정 : 수요중심이나 재정력 중심
이나) 문제와 재원활용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음

- 공식에 의한 배분은 재정력에 반비례하여 전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심사
에 의한 배분은 지방의 애로사항, 시급성, 필요성, 정책기획능력 등 경쟁
을 기본으로 해당 자치단체에만 배분함
- 중앙정부는 시도별로 쉐어링을 정하여 배분하고 시도는 지역 내 기초자치
단체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운영함
 - 특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100% 본청에서 운영
 - 8개 도는 50%는 본청에 배분하고, 50%는 기초에 배분함. 그리고 본청에
배분된 50%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음

※ 대안 : 중앙에서 배분

- 장점 : 운영의 간편성
- 단점 : 지역특성 고려 취약

5) 사후 관리 : 평가하여 성과·시책수요에 반영

- 지역발전교부세는 지방비가 매칭되지 않는 촉매재원이나 관련 사업군에
지원되는 일종의 특정 블록에 지원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재원의 집행실적, 사업의 효과 등을 평가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그 결
과는 특별교부세 성과·시책수요에 반영하여 재원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
한 자치단체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IV. 도로사업보전분의 발전적 활용방안

1. 도로사업보전분 활용으로 전환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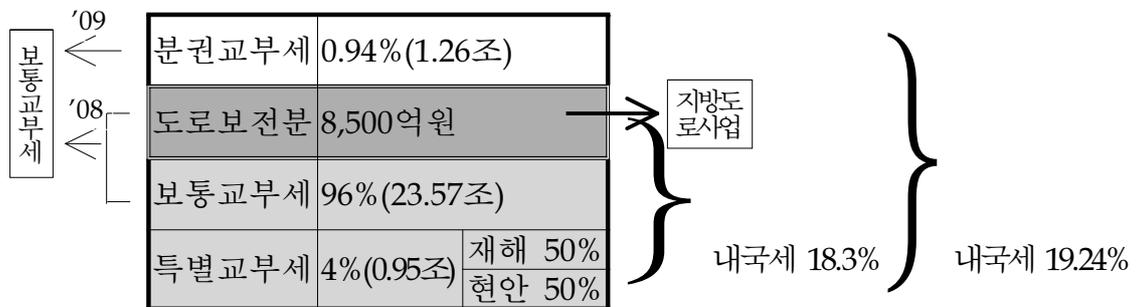
- 보통교부세의 일정분 → 지역발전교부세(지방공감 곤란)
 - 자동적 배분을 공모 등의 배분에 따른 우려
- 도로사업보전분 → 지역발전교부세(지방공감 곤란)
 - 명칭에 따른 오해, 기초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축소가능성에 따른 반발
 - ※ 지역발전교부세 : 기초 또는 낙후지역 부정, 광역 또는 수도권 지역 긍정
 - ※ 도로사업보전분의 보통교부세 통합 운영 : 기존 도로보전분 수혜단체 중 불교부단체, 재정력 상위단체, 사업 미완료 단체 부정

2. 도로사업보전분 개요

1) 지방교부세 지원배경

- '04.1.29 지방양여금법의 폐지와 아울러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기 시행 중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해 '05~'08까지 매년 8,500억원을 교부·지원키로 하였음(도로사업보전분은 '09년도에 보통교부세에 통합 예정)

<그림 5> 현행 지방교부세제도 구조



○ 8,500억원 지원 산출 근거

- 기시행(설계, 보상, 시공) 지방도로 사업규모 조사 - 18조 3,763억원 추정
- 지방양여금 해당분을 '04~'08까지(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함
- 4조 2,803억원을 5개년으로 분할하여 '04년 지원분 8,803억원을 공제한 잔여소요액 3조 4,000억원을 '05~'08까지 4년간 매년 8,500억원씩 지원토록 지방교부세법 부칙에 명시하여 개정 추진

<표 4> 소요액 판단현황

(단위 : 억원)

총 소요액			통계(도로현황)			심사(증장기계획)		
합 계	양여금	지방비	소 계	양여금	지방비	소 계	양여금	지방비
18조 3,763 (100%)	10조 3,642	8조 121	10조 7,872 (58.7%)	6조 839	4조 7,033	7조 5,891 (41.3%)	4조 2,803	3조 3,088

※ 1차조사시는 증장기계획에 의거 기 시행중인 지방도로정비사업을 기준함

2) 지방교부세 보전근거

- 지방도로정비사업 재원지원 방식이 '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에서 지방교부세로 변경

지방양여금 개편내용('04년기준 : 4조 3,972억원)

- 도로정비(1조 9,134억)·지역개발사업(7,562억) → 지방교부세(2조 6,696억)
- 수질오염방지(1조 3,149억)·청소년육성사업(303억) → 국고보조금(1조 3,722억)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3,554억)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3,554억)

※ 도로정비사업비 1조 9,134억원(광역시도3,143, 지방도 3,492, 시의국도 2,619, 시의시도 2,445, 군도 3,143, 농어촌도로 4,292)

- 지방양여금법 폐지 당시 시행중인 지방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해 '05~'08년까지 지방교부세로 매년 8,500억원 별도 지원

지방교부세법 주요 개정내용

부칙<제7126호,2004.1.29> : 지방교부세법 특례 조항

②(지방교부세 재원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양여금법의 폐지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천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에서 8천5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③(지방교부세 교부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제6조의 규정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그 도로정비사업의 양여기준에 준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계획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방교부세 배분방법

-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보통교부세 3조 4,000억원을 '05~'08까지 매년 8,500억원씩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05년 이후 남은 잔여사업비가 7조 4,176억원(교부요구액)으로 조사됨

<표 5> 실태조사결과 현황

(단위 : km, 억원)

구 분	총 계		기 추 진		사업량	'05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 업 비		
						계	양여금 (교부요구액)	지방비
총 계	4,059	197,492	1,539	75,302	2,520	122,190	74,176	48,014
광역시도	187	41,553	62	15,275	125	26,278	12,029	14,249
지방도	1,168	56,966	376	18,138	792	38,828	23,212	15,616
시의국도	351	42,828	186	20,671	165	22,157	13,109	9,048
시의시도	210	17,853	88	7,763	122	10,090	6,044	4,046
군 도	1,368	29,324	514	9,714	854	19,610	15,602	4,008
농어촌도	775	8,968	313	3,741	462	5,227	4,180	1,047

주 : ①조사결과는 공사중·보상중·실시설계완료·실시설계중의 4공정임

② 중장기계획이 아닌 통계기준에 의한 기 시행중인 지방도로사업을 기준함

- 교부요구액 7조 4,176억원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3조 4,000억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04 양여금지원 평균액 상회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고 등비율로 배분하도록 결정됨
- 상한선에 해당되는 10개 자치단체(경기, 강원, 수원시, 이천시, 천안시, 아산시, 목포시, 나주시, 제주시, 고성군)의 교부요구액 1조7,194억원에 대하여 교부세 지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지원하여 6,048억원 교부
 - ※ 교부세지원 상한액 : 광역시 2,095억원, 도 1,697억원, 시 341억원, 군 270억원
- 나머지 상한선에 해당되지 않는 163개 자치단체의 교부요구액 5조 6,982억원에 대하여는 등비율(49.1%)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함
 [2조7,952억원(3조4,000억원 - 6,048억원)/5조6,982억원]÷49.1%]
 - ※ ① 공사가 없는 자치단체(7개) : 성남, 안산, 하남, 광명, 과천, 안양(경기), 무안(전남)
 - ② 상한선 단체(10개 시·도) : 경기, 강원, 수원, 이천, 천안, 아산, 목포, 나주, 제주, 고성

▶ 교부세 34,000억원 배분기준

- '04 평균을 상회하지 않도록 상한액 설정 후 지원 : 6,048억 (10개 단체)
- 기타 등비율(49.1%) 적용 : 2조 7,952억 (163개 단체)

※ 공사가없는(미지원) 단체 : 성남, 안산, 하남, 광명, 과천, 안양(경기), 무안(전남)

3. 도로사업보전분 기한연장 검토

1) 도로사업보전분 추진실적('08년 사업계획 포함)

- 총 연장 2,679km, 14조 6,913억원의 물량 중
 - 사업완료(59%) : 1,578km, 7조 9,106억원
 - '08년 이후 잔여물량(41%) : 1,101km, 6조 7,087억원

<표 6> 도로보전분 집행현황

(단위 : km, 억원)

구 분	'05년 이후 계획				완료현황('05~'08계획)				잔여물량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교부세	지방비		계	교부세	지방비		계	교부세	지방비
총 계	2,679	146,193	30,982	11,211	1,578	79,106	30,982	48,125	1,101	67,087	14,222	52,865
광역시	128	34,25	4,259	30,466	66	15,464	4,259	11,205	62	19,261	4,083	15,178
도	762	44,484	10,158	34,326	388	22,865	10,158	12,707	374	21,620	4,583	17,037
시	888	51,885	11,582	40,303	568	31,542	11,931	19,611	320	20,692	4,387	16,305
군	901	15,099	4,983	10,116	556	9,235	4,634	4,602	345	5,515	1,169	345

※ 2차 조사('04년)결과, 총사업량은 2,520km(12조 2,190억)였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사업물량 2,520km보다 159km 증(2,679km), 사업비 2조4,003억 증(14조 6,193억)

○ 173개 단체 중 42개 단체 완료(미완료 131개 단체)

- 완료 : 기장(부산), 울주(울산), 수원, 오산, 안성,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여주, 양평(경기), 철원, 양양(강원), 충주, 옥천, 진천, 괴산, 음성, 단양(충북), 공주, 부여, 연기, 홍성, 예산(충남), 임실(전북), 순천, 광양, 장흥, 강진, 영암, 함평, 영광, 장성, 진도, 신안(전남), 영천, 영덕(경북), 창원, 하동, 산청, 거창(경남)

○ 불교부단체의 경우 총 사업량 138km, 1조 4,175억원 중

- 사업완료 : 100km, 1조 114억원
- 잔여불량 : 38km, 4,063억원

단체	계획(km)	잔여(km)	이행율
경기본청	110.8	34.6	68.8
수원시	4.59	완료	100
용인시	8.05	2.7	66.5
화성시	13.64	1.1	91.9
고양시	1.05	완료	100

※ 성남, 과천, 안산, 안양은 도로보전분 교부대상 제외

○ 잔여물량 완료까지 기한 추정 : ≍ 3년(1,101km/394km(4년평균 사업량))

2) 잔여물량 발생사유

□ 당초 계획되지 않은 타사업 도로에 사용

- 주민숙원사업, 산업단지·항만 등 시급한 연계도로 등에 투자
 - 교부세 사용액 : 3,018억원 (208개 노선, 226.1km)
 - ※ 총 교부세 3조 4,000억원의 8.8%에 해당

[타 사업에 집행현황]

(단위 : km, 백만원)

도로별	구 분	노선수	사업량	미확정된 노선에 교부세 집행금액
계		208	226.1	301,841
광역시도		34	29.18	164,009
지방도		8	10.2	21,528
시의국도		2	1.4	2,407
시의시도		31	13.71	30,666
군도		70	99.85	45,977
농어촌도로		63	71.76	37,254

□ 사업비상승, 설계변경 및 지방비 부담축소 등

- ① 용지보상비 및 물가상승 등 사업비 상승으로 인한 잔여물량
 - 잔여물량 : 265km, 사업비 : 1조 6,141억원 (교부세 : 3,422억원)
 - ※ 교부세 지원액 산출 : 16,141억 × 21.2% = 3,422억
 - 21.2%(’05년 이후 계획 2,679km의 총사업비에 대한 교부세 비율)
- ② 장기계속사업에 의한 사업비 축소 및 지방비부담 축소로 인한 잔여물량
 - 잔여물량 : 476km, 사업비 : 2조 9,028억원 (교부세 : 6,154억원)
- ③ 기타,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잔여물량
 - 잔여물량 : 360km, 사업비 : 2조 1,918억원 (교부세 : 4,647억원)

[유형별 잔여물량 현황]

(단위 : km,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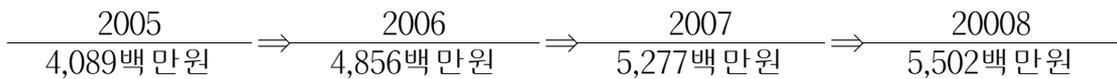
도로별 유형별	계		광역시도		지방도		시의국도		시의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잔여 사업비
	노선수	사업량	노선수	사업량	노선수	사업량	노선수	사업량	노선수	사업량	노선수	사업량	노선수	사업량	
계	558	1,101	32	62	107	374	54	80	47	43	191	406	127	136	67,087
① 용지보상비 증가 및 물가상승	152	264.96	3	4.08	23	72.66	17	20.74	17	19.42	48	105.18	44	42.88	16,141
② 장기계속 공사로 사업비 축소 및 지방비 축소부담	251	476.49	8	17.95	52	200.82	31	47.11	23	18.49	84	136.18	53	55.94	29,028
③ 기타 (설계 및 사업 계획 변경)	155	359.79	21	39.99	32	100.76	6	12.15	7	5.58	59	164.48	30	36.83	21,918

3) 현안과제

- 전체 1,249개 노선 2,520km 3조 4,00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08까지 매년 교부세로 8,500억원씩 투자할 경우 '08이후 잔여 사업량은 실태조사 결과 1,101km, 6조 7,087억원으로 향후 약 3년 상당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4년간 평균사업량 394km로 약 3년 소요)

- 4년간('05~'08)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석하면 대부분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할 사업량은 많고,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비 증가,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사업비 축소지원,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km당 사업비 증가, 교부세 지원에 따른 지자체 지방비 축소 부담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됨

< 매년 km당 사업비 증가 >



- 지방도로상 노후 및 위험교량에 보수·보강 또는 재가설을 적기에 안할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등의 우려가 있음

- 지방도로상 노후 및 위험교량으로 유지보수나 재가설 등이 필요한 교량은 총 2,731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시지역 보다는 지방지역, 상급도로 보다는 하급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63%인 1,716개소는 안전사고 위험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개량이 시급한 교량으로 총 사업비는 약 2조 5,541억원 상당이 소요됨

- 국가기반시설,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연계되는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 필요

- 지방도로 주변의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과 대도시 주변의 아파트건설로 인한 인구집중, 고속국도 및 국도건설로 연계되는 간선도로망 확충이 안되어 운전자의 접근성과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음
- 행정도시, 기업도시, 신도시건설, 택지개발, 새만금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도로의 교통체증 심화, 고속국도 및 국도의 확장 신설시 지방도로 주변 지역의 병목현상 초래, 또한 재정여건에 따른 투자가 안됨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혼잡구간의 정비를 통해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중심도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정비 등 지방도로의 지역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임

- 국가기반시설 및 혁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 등과 연계하여 국가 간선도로상의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국가간선 도로망과 연계 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업규모는 총 4,973km, 25조 2,225억원 상당이 소요됨

3) 기한만료 시 문제점

- 교부세로 추진중인 지방도로에 사업비 중단시 마무리 사업추진 지연
 - 기한 연장과 사업비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09부터 교부세 지원 중단시에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지연 및 지자체 반발이 우려됨
 - 자치단체 '08이후 미 마무리 사업: 지방도로 1,101 km 637,087억원
 - ※ 자치단체에서 확정되지 않은 노선에 지원하게 된 주요원인은 지역주민숙원사업, 산업단지조성, 항만 등 연결, 상위도로와의 연계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부 지원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보수나 재가설이 시급한 노후·위험교량의 예산부족으로 방치
 - 지방도로상, 노후 및 위험교량으로 유지보수나 재가설 등이 필요한 교량은 총 2,731개소로 이중 C급은 2,333개소(85%)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 D·E급인 398개소(15%)는 긴급 보수·보강 또는 사용금지로 조속한 개량이 필요한 위험교량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상의 노후 및 위험교량의 전체 65%인 1,766개소는 안전사고의 우려로 보수·보강 및 재가설 등이 시급함
 - 지방도로상 노후 및 위험교량 : 전국 2,731개소, 2조 5,541억원 소요
-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연계되는 사업에 투자가 미흡
 - 국가기반시설 및 혁신도시와 행정도시 등과 연계하여 간선도로상의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을 대비하여야 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국가간선교통망과 연계된 사업을 사실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신항만, 혁신·기업도시, 공항, 국도 연계 등 총 1,058지구 4,973km, 25조

2,225억원 소요

- 보통교부세 지원시 지방비 부담비율 기준없이 각각 상이하게 추진
 -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숙원사업,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지방도 로정비사업에 투자할 지방비 확보가 어렵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서로 최대 84.7%정도 각각 차이가 있는 실정임
 - ※ 부산 72.9%, 대구 24.8%, 인천 76.1%, 광주 77.3%, 대전 54.9%, 울산 7.0% 경기 91.7%, 강원 36.4%, 충북 40.2%, 충남 53.0%, 전북 47.4% 전남 35.7%, 경북 58.9%, 경남 55.0% 제주 24.2%
 -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부담을 전혀 하지않고 보통교부세(도로사업보전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 <사례> 울산시 산업로 배면도로공사(광역시도), 이천시 안흥~갈산간 공사(시의 시도), 삼척시 맹방~금계간 공사(군도), 남원시 장교~임리간 공사(군도)

4. 도로사업보전분 기한연장과 활용

1) 기한연장

(1) 필요성

- ① 자치단체 '08이후 미 마무리 사업(지방도로 1,101 km, 계획 대비 44%)의 지속 추진
- ② 보수나 재가설이 시급한 노후·위험교량의 예산 지원
- ③ 지방(특히 재정력 취약)의 국가간선도로망과 연계 사업추진 지원
- ④ 행복·혁신·기업도시와 공단·항만, 신도시 등과 연계도 추진 지원

(2) 조치방법

- ① 보통교부세로 완전 통합할 경우 이들 분야에 사용되기 어려움. 또한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함 → 기한 연장으로 이들 부분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함

② 지방교부세법 부칙에 특례조항 신설(기존 부칙 개정)하여 보통교부세로 완전통합하지 않고 도로보전분(8,500억원) 기한연장을 할 수 있음

※ 그동안 도로보전분은 보통교부세인데 부칙에 특례로 배분되었음

※ 일본의 경우도 지방재생대책비를 지방교부세법 부칙에 신설하고 있음

**일본 : 2008년 4월 지방교부세법 부칙에
지방재생대책비(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 특례 신설**

- 원래 기준재정수요액(제11조)에
- 지방재생대책비를 산정하여 가산함(부칙 제5조2) : 자치단체 종류별로 다름
 - 도도부현 : 인구수 × 1,300엔(1인당)
 - 시 정 촌 : 인구분(1인당 1,670엔), 면적분(경지및임야면적 1ha당 1,210엔)
- * 단계보정 및 경비필요성에 대한 보정도 함

(3) 연장기간과 사업확대

○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지방교부세 지원기한 연장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교부세법 개정하여 지원 기간연장 (기획예산처 및 교부세팀 협의)

현 행	→	개 정
2008.12.31		2011 (3년)

-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교부세 전환에 따른 투자재원의 안정적 지원 추진
· '05~'08까지 미마무리 된 1,101km 6조7,087억원 계속지원

○ 지방도로정비사업 이외 노후·위험교량과 행복도시·기업도시 등 국가간선교통망과 연계사업 확대 추진

- 지방도로 상 긴급 보수·보강 및 사용금지 된 노후·위험교량 총 2,731개

소(2조 5,541억원 소요)의 개량 추진

- 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행복·혁신·기업도시와 공단·항만, 신도시 등과 연계도로 1,058개소 4,973km(25조 2,225억원 소요) 개설 등 추진

2) 대상사업

○ 가능사업

- 기존재원활용결과 : 재원의 93%는 계획된 도로사업에 사용, 7%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확정되지 않았던 다른(도로)사업, 즉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사업, 산업단지, 항만 등 연계사업에 투자함
- 도로관련 사업에 활용 : 미마무리사업, 노후 및 재가설 교량, 국가간선도로망 연계, 공단·항만·신도시 연계

○ 대상사업 검토

1안	2안	3안
미마무리 사업	미마무리사업 노후및재가설교량 국가간선도로망 연계 공항·항만·신도시 등 연계	2안 + 신설도로(예, 관광도로, 개발촉진지구연계, 도서종합개발 등 새로운 사업관 관련된 연계)
<장점> - 미마무리사업 추진	<장점> -도로사업 추진 -지역경제활성화에 연계 -재정력취약단체(낙후지역) 지원 -불교부단체 불만 해소 -대상단체 확대(전 자치단체)	<장점> - 2안 장점 - 자치단체 탄력 운영(지율성) - 지역경제활성화에 연계 - 새로운 수요에의 대응
<단점> - 미배분단체, 원료단체 불만 - 다른사업추진단체 지원문제	<단점> -사업과약 -미해당단체 有 가능성 -배분상 어려움 ·사업별→공식 배분 필요	<단점> - 사업발굴 곤란으로 배분문제 ·국고보조사업과(균특) 중복 ·특별교부세사업과 연계

※ 하천정비, 우수처리정비 등도 고려되나 국고보조사업임/도로이외 다른 사업 고려
 ※ 일본 : 지역경제진흥 관련 보통교부세에 지역진흥비 산정(인센티브), 투자사업관련 포괄산정(신형교부세), 지역재생대책비(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내각부운영) 등 최근 경제활성화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음

○ 검토결과

- 미마무리 기존도로사업과 신수요의 모든 도로사업(제3안)

3) 자원배분

- 보통교부세의 일부를 특례로 블록화하여 관련사업에 지원하는 성격이며, 과거 지방양여금제도가 있었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배분해야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원 배분방법이 용이하지 않음

○ 대안 검토

대안 1 : 사업기준으로 배분

- 매년 대상사업을 조사하여 해당사업에 지원
- 단, 단체별 한도액을 설정

대안 2 : 단체기준으로 배분

- 대상사업과 관계없이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 단체별 수요액을 파악하여 수요에 비례하여 배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배분
- 재정력지수 0.5이하 : 1. 0.5~1 : 0.8, 1이상 : 0.6

대안 3 : 광역단체에 배분

- 광역단체별로 배분하여 광역에서 심사(시급성, 중요성 등)하여 시도비보조금과 함께 지원토록 함

※ 도로사업보전분은 보통교부세 배분의 특례지만 공모에 의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검토결과

- 미마무리 기존사업과 신수요 도로사업의 배분비율(예 50% 대 50%)
- 중앙배분 혹은 광역단체 쉐어링 배분 후 광역에서 자율적으로 기초에 배분하는 등의 배분 방법
- 심사 배분 혹은 공식배분 등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지속적 검토 필요(추후 검토)

4) 명칭부여

○ “도로사업보전분”의 명칭

- 지역발전교부세의 도입 목적과 추구방향이 같음. 단,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발전교부세는 명칭, 재원조달 및 방식은 지방의 의견수렴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도로사업보전분의 기한연장은 합의된 것으로 이의 활용방법과 관련하여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대안 검토

1안	2안	3안
보통교부세 통합	도로보전분	지역기반보전분
×	현행(100% 도로)	변경(도로중심+다른사업)
	기한 정해야 함(현재 3년 연장)	추후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시 다른제도로 발전할 수 있음

○ 검토결과

- 명칭부여는 지역발전교부세가 아닌 도로사업보전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지방의 수용 측면에서 적정함

5) 실적평가 및 특별교부세 성과수요반영 여부

○ 실적평가 필요여부

- 과거에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경우 있음(7%정도)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적평가 필요(보통교부세로 다른 곳에 사용 가능한지 검토)

○ 실적평가 시 특별교부세 성과수요에 반영 필요 여부

- 실적평가는 필요하며 그 결과를 계속 지원 여부 결정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성과수요 반영은 부적절함
- 이미 사업을 수행함을 근거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수요에의 반영은 불필요함

<표 7> 도로보전분 활용방안 모색 관련 주요 쟁점 및 검토결과

주요 분야	쟁점 및 검토결과
○도로보전분('05.1~'08.12) 지원특례 유지(기한연장)	○일몰제 : 예측미흡, 상황변화 → 연장가능 및 필요 ※모럴헤저드 : 다른 사업(8.8%), 지방비부담 문제 ※지원 : 불교부단체, 교부단체간 의견 차이 ※기존 지방양여금 사업 존중 필요
○지원논리 및 타당성	○불가피성 인정시 지원 → 사업 미마무리, 형평성 ※ 잔여사업 41%, 불가피성 인정됨
○지원 및 배분방법	○미추진도로 한정 or 도로전반(지방자율)→ 사업지정 및 지방자율 판단 논의 ※지원범위, 사용금지, 지방비, 한시적 규정 -미추진 사업 : 사업계획(3년)에 의거 지원 ○도로블럭으로 지원 지방자율집행(지방우선순위) ○ 배분방법 지속적 논의(추후 결정)
○평가 및 인센티브	○ 실적평가 : 지속 지원여부 결정 ○성과수요 반영 부적절(미추진 사업 지원시) ※ 인센티브 수요와는 다름

V. 성과 · 시책수요의 신설방안

1. 특별교부세 운영실태

1) 특별교부세제도 운영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요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부함
 - 첫째,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수요가 있을 때
 - 둘째,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 셋째, 지방행정 및 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사용됨
-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통교부세의 획일적인 산정방법에서 발생하는 기준재정수요·수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연도중에 발생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보통교부세의 보완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일정분을 특정목적을 위해 확보한 재원으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의 탄력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별로 지원되는 특정재원으로 재원사용의 구속성이 있음
-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 법정율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분권교부세 법정율 0.94%를 제외한 재원 중 4%(96%는 보통교부세 재원)의 재원으로 운영됨
- 특별교부세 재원의 50%는 지역현안수요, 또 다른 50%는 재해대책수요로 배분됨
 - 지역현안수요는 지방재정결함보전, 전국체전 준비 등에 지원되며 시·구·구별 지역현안사업에 배분됨

- 재해대책수요는 수해·태풍 등의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사업의 재원보전으로 사용되며 잔여재원은 정부합동평가 등 정책추진 우수단체위 재정지원에 배분됨

<표 8> 특별교부세의 구성 및 재원규모(2007년도 기준)

구 분	비 율	규 모	비 고
총 계	100%	8,266	-
지역현안수요	50%	4,133	- 전국체전준비 등 전국행사 지원 - 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재해대책수요	50%	4,133	- 수해·태풍 등의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사업 재원보전
우수단체 재정지원	재해대책 수요잉여분		- 행정·재정실적 우수 자치단체

자료 :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제도 운영, 2007

2) 성과·시책수요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 성과수요 운영 실태와 문제점

- 지방 행·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은 재해대책분의 나머지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인센티브재원이 정해지지 않고 여유분으로 운영되어 인센티브 재원의 연도간 변동이 큼으로 인해 재원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연계성이 부족함
- 예를 들면, 2005년 1,678억원에서 2006년 373억원으로 급감할 정도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 이는 지방의 정책연계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표 9>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지원현황

평가분야	사업명	2005	2006
합계(억원)	12개 분야	1,678	373
지방행정·재정 종합평가	소계	674	246
	지방행정혁신평가	375	106
	국정시책합동평가	99	45
	재정분석평가	200	95
지방행정·재정 개별시책	소계	151	54
	혁신선도단체	85	-
	행정혁신우수단체	22	16
	민원행정추진상황 종합평가	8	8
	정보화마을	16	10
	지방재정 조기집행	20	-
상생발전, 분쟁 집단민원·정책 현안해결	소계	66	10
	상생발전협약, 갈등해결	39	10
	집단민원 해결	27	-
기타 행·재정 우수단체	소계	787	83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지원	363	-
	기타 주요우수 정책사업	424	83

○ 정부의 지역경제활성과 등 시책수요 반영 미흡

- 2005년도 이전까지는 특별교부세에 시책수요분이 있었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시책수요분이 보통교부세에 포함됨으로 신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등 각종 시책수요를 연계할 수단이 미흡함

2. 특별교부세제도 내 성과·시책수요 신설방안

1) 필요성

- 시책수요는 기존에 활용되었던 경험이 있으며, 성과수요는 불안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인센티브(재해대책분의 여유재원)가 운영되고 있어, 이들을 하나의 수요로 하여 일정분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시책수요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종 시책의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제도를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특별교부세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유치, 지역발전 성과 등을 연계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음
 - 한편, 지역발전교부세 도입의 검토에서 그 운영방식이나 대상사업이 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과 운영방식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발전교부세 도입 대신에 특별교부세 내에 시책수요분을 신설하여 운영하여도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성과수요는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여 활용함으로써 정책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성과·시책수요 신설방안

- 현행 특별교부세의 운영을,
- 재해대책분 50%, 지역현안분 50%의 운영에서 지역현안분 50%를 지역현안분 30%와 시책(성과)수요 20%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 성과수요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와 중복의미도 있어 이의 통합도 필요하며 시책과 성과를 같이 통합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지역현안분은 지역경제활성화 등 정부 시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음
-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함
 - 여기에는 정부의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직접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양자를 혼합하여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일본의 특별교부세에서는 양자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책추진과 그 시책의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재원의 2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해대책분의 경우 여유재원의 재정인센티브 재원으로의 활용보다는 재해복구 뿐 아니라 재해예방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VI. 정책건의

1. 지역발전교부세 도입(도로사업보전분 기한 연장)

- 지역발전교부세 도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통교부세 활용이라는 점에서 지방의 수용이 곤란하여 도입 타당성이 부족함
- '08년도 말에 종료되고 '09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예정에 있는 도로사업보전분(8,500억원)의 기한연장으로 활용함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 도로사업보전분 연장은 41%의 미마무리 사업에 도로관련 신수요를 포함하여 모든 도로사업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지방간 형평성, 지역경제화령화 연계 등에서 타당함
 - 지방교부세법 현행 부칙을 수정하여 도로사업보전분 기한 만료기한을 2011.12(3년 연장)로 수정 필요
 - 우선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필요한 위의 2가지 내용을 결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추가 연구가 필요함

2. 성과·시책수요 신설

- 특별교부세 제도 개선 차원에서 성과·시책수요분을 신설함은 타당함
 - 현행 특별교부세 운영이 재해대책분 50%, 지역현안분 50%로 운영되는 것을 재해대책분 50%는 유지한채 지역현안분 50%를 지역현안수요 30%, 시책(성과)수요 20%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시책수요의 신설은 정부의 각종 시책과 재원의 효율적 사용, 경쟁과 성과의 유도 차원에서 필요하며 일본 등에서도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재해 대책분 50%의 활용에서 그동안 재해복구비 지원으로만 활용되던 것에서 사전적 재해예방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있음

<부록>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 개혁 내용

1. 일본의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고 그 재원의 균형을 도모하며 교부기준 설정을 통해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 실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임(법1조)
- 재원의 균형화(재정조정기능) :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균형화 시킴
- 재원의 보장(재원보장기능) :
 - 거시적 시각 : 지방교부세 총액은 국세 5세의 일정비율이 법정화되면서 지방재원은 총액이 보장됨
 - 미시적시각 :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의 기준설정을 하여 지자체에 대해서도 행정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재원을 보장
- 운영의 기준
 - 지방교부세 총액을 재원부족단체에 형평하게 교부해야 함(법3조1항)
 - 교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를 존중하고, 조건을 부여하거나 그 사용 용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됨(법3조2항)
 - 지자체는 그 행정에 있어서 합리적이며 타당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적어도 법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령에 의해 의무가 지워진 규모와 내용에 준해서 준비해야만 함(법3조3항)
- 지방교부세의 성격
 - 지방단체 공유의 고유재원
 - 지방의 일반재원
 - 국가 또는 지방의 세원배분을 보완
- 지방교부세 총액
 - 법정5세분:
 - 소득세 및 주세의 32%,
 - 법인세의 32%(2000년도부터 당부간 35.8%),
 - 소비세의 29.5%
 - 담배세의 25%
 - 특별 가산분 등 : 이 외에 각 년도의 지방재정대책에 의한 일반회계로

부터의 가산, 차입금의 변제 등이 있음

○ 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 : 재원부족단체에 대한 교부(교부세총액의 94%)
-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로 보전 되지 않는 특별 재원 수용에 대한 교부 (교부세 총액의 6%)

○ 보통교부세액 결정

- 각 단체별로 보통교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재원부족액(교부기준액)
- 기준재정수요액 = 단위비용 × 측정단위 × 보정계수
- 기준재정수입액 = (표준적세수입(시정촌분의 세교부금을 포함) 및 지방특례교부금의 75%(縣分), 75%(市町村分)) + 지방양여세

○ 특별교부세의 결정

-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족되지 못한 특별 재정수요가 있을 것,
- 기준재정수입액에 과대하게 산정된 재정수입이 있을 것
- 보통교부세액 산정기일 후에 생긴 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 재정수요가 있을 것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지방교부세 교부시기

- 보통교부세 - 각 지자체의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하여 4월, 6월, 9월 및 11월의 4회에 나누어 교부
- 특별교부세 - 회계연도 기간 도중에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2월 및 3월에 2회 나누어 결정·교부함

<표>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총액등의 추이(지방재정계획 베이스)

구분	지방교부세총액		지방교부세총액+ 임시재정대책채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2003년	18조 693억엔	▲7.5%	23조 9,389억엔	5.1%
2004년	16조 8,861억엔	▲6.5%	21조 766억엔	▲12.0%
2005년	16조8,979억엔	0.1%	20조 1,210억엔	▲4.5%
2006년	15조 9,073억엔	▲5.9%	18조 8,145억엔	▲6.5%
2007년	15조 2,027억엔	▲4.4%	17조 8,327억엔	▲5.2%

2. 2007년도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1) 주 개정내용

(1) 지방행정에 필요한 경비(이하 공채비를 제외)를 「개별산정경비」와 「그 외의 경비(이하 포괄산정경비로 함)」의 2종류로 구별한 점

* 개별산정경비는 지방교부세법 제12조 제1항(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경비 종류를 구분하여 그 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의됨

(2) 개별산정경비에 있어서는 종래의 경상경비와 투자적 경비의 구별이 없어진 점

○ 이 구별은 투자적 경비산정이 「감가상각비산입방식」에서 「계획적 사업비산입방식」으로 바뀐 1969년으로 되돌아 감. 이 구별이 없어짐으로 산정항목의 대폭적으로 간소화가 실현됨

(3) 개별산정경비는 토목비의 일부(도로교량비, 항만비)을 제외한 경상경비를 대상으로 한 점

○ 「도로교량비」, 「항만비」의 투자적 경비 부분은 개별산정경비 내에 남게 되었으나 그 외의 투자적 경비와 경상경비 중 「기획진흥비」, 「그외 제비용」은 포괄산정경비 대상이 됨

○ 즉, 투자적 경비의 대부분은 재정수요를 경비의 종류 구분 없이 간소한 형태로 산정하게 됨

○ 개별산정경비의 단위비용을 전년도 단위비용(토목비 일부를 제외한 경상 경비 부분과 비교)과 비교하면 도부현(道府縣)에서는 32개의 단위비용 중 24개, 시정촌에서는 36개 단위비용 중 25개의 비목으로 작년(2006년)보다 감액됨

(4) 개별산정경비에 있어서 경비 종류가 변경됨

○ 도부현의 경우, 「특수교육제학교비」, 「그외 행정비」대신에 「특별지원학교비」, 「총무비」를 만들

○ 시정촌의 경우, 「그 외 산업경제비」, 「그외 행정비」대신에 「임야수산행정비」, 「총무비」를 만들

○- 또한 총무비 중에는 도부현, 시정촌 모두 「지역진흥비」를 만들

* 이번 개정에서 조건불리지역(농산어촌과 낙도)에의 영향이 가장 우려되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설된 것임

- 간소화를 위한 개정과는 반대로 「지역진흥비」에는 복잡한 보정계수(도부현의 경우 측정단위 인구에는 단계보정, 밀도보정, 태용보정, 한랭보정, 시정촌의 경우 인구에는 단계보정, 밀도보정, 태용보정, 한랭보정, 면적에는 종별보정, 태용보정, 한랭보정)가 주어지게 됨

(5) 포괄산정경비의 측정단위를 인구와 면적으로 한 것

- 이 부분이 「신형교부세」로 칭하는 부분임
- 2006년까지 투자적경비의 특정단위에는 생도수, 학급수(교육비), 65세이상 인구(후생노동비, 후생비), 계획구역내 인구(도시계획비) 등 단지 인구와는 다른 지표가 이용되었으나, 이러한 것들은 인구로 통일됨

(6) 포괄산정경비의 단위비용을 도부현, 시정촌 각기 다음과 같이 정한 것

	측정단위	단위비용
도부현	인구	1인당 12,390엔
	면적	1 km ² 당 1,114,000엔
시정촌	인구	1인당 23,220엔
	면적	1 km ² 당 2,357,000엔

- 또한, 측정단위에 대한 보정은 인구의 경우 단계보정을, 면적의 경우는 종별보정으로 한정됨
- 이 외에 별도로 2007년도부터 「간바루지방응원프로그램」에 대한 교부세 지원조치가 시작됨(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그 활동성과(아웃컴 성과지표)에 따라 교부세 지원조치가 강구되는 것임(성과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됨). 2007년도 교부세 조치액은 2,200억엔 정도

2. 신형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영향

- 총무성 자치재정구 교부세과의 「포괄산정경비(신형) 도입에 따른 변동액 시산조」가 발표됨
- 신형교부세 도입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하는 단체는 1,282단체, 역으로 감소하는 단체는 585단체
- 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 변동비율도 ±1% 미만으로 영향도는 낮음

- 도도부현, 지정도시의 경우 증가단체는 31, 감소단체는 31.
- 증가단체평균 기준재정수요액 증가액은 2.6억엔(기준재정수요액의 10.1%), 감소단체는 △3.8억엔(△0.1%감소)임
- 중핵시, 특별시, 그 외시, 정촌의 영향도는 다음의 표와 같음

< 포괄산정경비 도입에 따른 변동액 시산 >

	단체수	증가단체	증가단체의 평균변동액 (억엔)	감소단체 수	감소단체의 평균변동액(억엔)
도도부현·지정 도시	62	31	2.6 (0.1%)	31	-3.8 (-0.1%)
중핵시, 특별시	75	36	0.6 (0.1%)	39	-0.6 (-0.1%)
그 외 시	689	432	0.4 (0.3%)	257	-0.3 (-0.2%)
정촌	1041	783	0.2 (0.7%)	258	-0.2 (-0.4%)

3. 2007년도 지방교부세 개혁

1) 2007년도 보통교부세 개요

(1) 결정액

구분	2007년도	2006년도	신장율
총액	14조 2,903억엔	14조 2,903억엔	△4.4%
도부현(道府縣)분	8조 603억엔	8조 603억엔	△4.6%
시정촌(市町村)분	6조 2,300억엔	6조 2,300억엔	△4.2%

(2) 교부단체 및 불교부단체수

구분	2007년도			2006년도		
	교부	불교부	계	교부	불교부	계
도부현(道府縣)분	45	2	47	45	2	47
시정촌(市町村)분	1,618	186	1,804	1,651	169	1,820
계	1,663	188	1,851	1,696	171	1,867

2007년도 보통교부세의 산정결과(재원부족 단체)

1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교부기준액

(단위: 억엔, %)

구 분			도부현분		시정촌분	
			2007년도	전년도 대비 신장율	2007년도	전년도 대비 신장율
기준재정수요액	포괄산정경비 a	14,882	-	27,129	-	
	개별산정경비 (공채비 등 제외) b	155,110	-	137,505	-	
	소 계(a+b) c	169,992	△ 1.9	164,634	△ 1.9	
	공채비 등 d	24,583	7.1	19,228	9.9	
	임시재정대책 채대채상당액 e	11,721	△ 9.5	9,502	△ 9.6	
	합계(c+d-e) f	(194,575)	(△ 0.8)	(183,862)	(△ 0.8)	
기준재정수입액		182,854	△ 0.2	174,360	△ 0.2	
교부기준액		101,939	3.7	111,761	2.2	
보통교부세액		80,915	△ 4.8	62,599	△ 4.3	
		80,603.	△ 4.6	62,300	△ 4.2	

- (주) 1 기준재정수요액의 ()는, 임시재정대책채로 대체된 금액을 포함한 경우의 계수임.
 2 2007년 재원부족단체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신장율을 산출하고 있음. 또한, 교부기준액 및 보통교부세액에 대하여서는 전년도의 실적에 대한 신장율임.
 3 교부기준액과 보통교부세액과의 차액은 조정액임.
 4 보통교부세 총액은 14조 2,903억 엔이며, 전년도 대비 4.4% 감소함

(3) 주요 개정항목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 개정

- ① 「간바루(열심을 내는) 지방응원프로그램」의 교부세 조치로서 「매력 있는 지방」의 실현을 위한 실시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에 의해 산정
- ② 산정방법을 근본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기준이 없거나 혹은 약한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인구와 면적을 기본으로 하는 간소한 산정(신형교부세)를 도입
- ③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복지시설의 충실, 장애인 자립지원,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치함
- ④ 특별지원교육의 충실, 교육정보화대책, 사학조성 충실 등 교육시책에

필요한 경비,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정보화 시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재원을 조치함

- ⑤ 주민 생활과 직결한 공공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관광 입국추진대책, 치안유지특별대책, 소방구급업무에 필요한 경비 재원을 조치함
- ⑥ 환경과 조화한 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지향하여 자연환경 보전,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이용 촉진 등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필요한 경비 재원을 조치함
- ⑦ 그 외 제도의 개정에 따른 필요한 경비 및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수분의 확보을 위해 필요한 경비 재원을 조치함
- ⑧ 임시재정대책채(臨時財政對策債)의 대체액수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액을 기준재정수요액수로 함

○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의 개정

- 개인주민세 중, 소득세로부터 세원이양에 의해 영향 받는 금액의 전액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함

4. 「간바루(열심을 내는) 지방응원프로그램」

- 「간바루(열심을 내는) 지방응원프로그램」의 교부세 조치로서 「매력 있는 지방」의 실현을 위한 실시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에 의해 산정
 - 산정액 2,220 억엔
 - 성과지표 : 행정개혁지표 전입자 인구, 농업산출액, 매업연간상품판매액, 제조품출하액, 젊은층(若年者)취업율, 사업소부, 쓰레기처리량, 출산율
 - 단, 성과지표 산정에 있어서 조건불리지역 상황을 반영함
 - 산정 방법 : 「지정도시 · 중핵시 · 특례시」, 「일반시」 · 「정촌」으로 그룹별로 나누어 성과지표를 비교함.
 - ※ 그룹별로 분리하지 않았을 경우 조건불리지역을 보다 많이 포함하는 「정촌」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그룹별로 나누지 않고 비교함
 - 성과지표가 그룹평균(그룹 분류하지 않는 경우는 전국평균)이상의 지방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할증 산정함

- 행정개혁지표 중 지방세징수율, 출생률, 쓰레기처리량 및 젊은층 취업률에 대해서는 지표의 변화율과 절대치를 병용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열심(간바리)」을 반영
- 전국평균이상으로 세출을 삭감하고 있는 과소(過疎), 이도(離島)의 시정촌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할증을 함

「시정촌분」

성과지표		비목	할증대상경비	산정액
행정혁신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	세출삭감율	지역진흥비	세출삭감실시에 필요한 경비	270억 엔
			지역진흥관계경비	750억 엔
			- 조건불리지역에 더욱 할증	340억 엔
	징수율	징세비	징세강화에 필요한 경비	70억 엔
			소 계	1,090억 엔
출생율		사회복지비	저출산대책경비	120억 엔
쓰레기 처리량		청소비	폐기물감량화대책·분리수거경비	110억 엔
농업산출액		농업행정비	농업진흥관계경비	90억 엔
소매업연간상품판매액		상공행정비	관광진흥관계경비, 상업진흥관계경비	110억 엔
제조품출하액		지역진흥비	지역진흥관계경비	80억 엔
사업소수		지역진흥비	지역진흥관계경비	90억 엔
젊은층 취업율		지역진흥비	지역진흥관계경비	100억 엔
전입자인구		지역진흥비	지역진흥관계경비	90억 엔

「도도부현분」

성과지표		비목	할증대상경비	산정액
행정혁신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	세출삭감율	지역진흥비	세출삭감 실시에 필요한 경비	100억 엔
			지역진흥관계경비	60억 엔
		징수율	징세비	징세강화에 필요한 경비
			소 계	180억 엔
농업산출액		농업행정비	농업진흥관계경비	60억 엔
소매업연간상품판매액		상공행정비	관광진흥관계경비, 상업진흥관계경비	70억 엔
제조품출하액		상공행정비	산업진흥관계경비	40억 엔

「총괄표」

	산정액
시정촌분	1870억 엔
도도부현분	350억 엔
합 계	2,220억 엔

* 10억엔 미만은 사사오입을 하였기 때문에 개별 산정액 합계와 총괄표는 일치하지 않음

5. 간소한 새로운 기준에 의한 산정(신형교부세)

- 산정방법의 근본적 간소화를 꾀하고, 교부세의 예견 가능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포괄산정경비(신형)」로서 인구와 면적을 기본으로 한 간소한 산정방법을 도입.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변동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함

① 「국가의 기준 부여가 없거나 약한 행정분야」(기준재정수요액의 1할정도)의 산정에 대하여 도입
② 인구규모와 택지, 전답 등 토지의 이용형태에 의한 행정비용차를 반영
③ 산정항목의 통합에 의한 「개별산정경비(종래형)」의 항목수를 3할 삭감 * 2006년 95(도도부현 42, 시정촌 53) =====> 2007년 68(도도부현 32, 시정촌 36)
④ 이도(離島), 과소(過疎) 등 신중한 배려가 필요한 지방공공단체에 대응한 구조를 확보(「지역진흥비」의 창설)

- 2007년도 신형교부세 산정액

구분	도부현분	시정촌분	합계
포괄산정경비 (신형)	16,160억엔	33,840억엔	50,000억엔

기준재정수요액(공채비제외) 41조엔의 약 1할(12%)

<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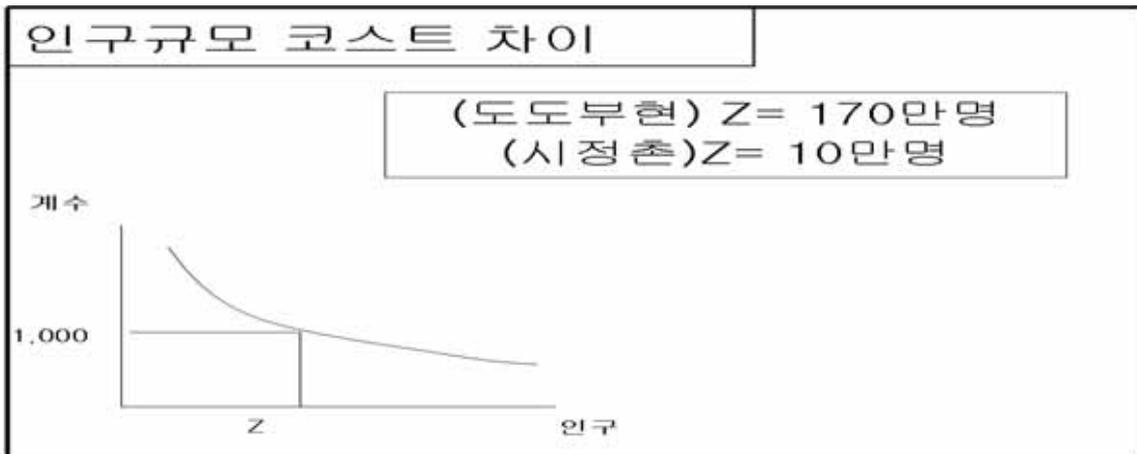
$ax + by$

a: 12,390엔(도도부현), 23,220엔(시정촌)

b: 1,114,000엔(도도부현), 2,357,000엔(시정촌)

x: 인구규모 코스트 차이를 반영한 인구

y: 토지이용형태 코스트 차이를 반영한 면적



인구규모 코스트 차이

도도부현
택지: 1.00(고정자산가격 등의 개요조서) 경지: 2.87(농림업센서스) 임야: 0.60(농림업센서스) 그외: 0.59(상기이외의 국토지리원공표면적)
시정촌
택지: 1.00(고정자산가격 등의 개요조서) 전답: 0.90(고정자산가격 등의 개요조서) 임야: 0.25(농림업센서스) 그외: 0.18(상기이외의 국토지리원공표면적)

* 조건불리지역의 배려 등

지역진흥비

- ① 조건불리지역의 대응
- ② 행정혁신인센티브 등예의 대응

산정비목의 통합 및 수정

① 도부현분

2006년도

2007년도

비목	측정단위	
경찰비	경찰직원수	
도로교량비	도로 면적	
하천비	하천 연장	
항만비	계류시설 연장(항만)	
	계류시설 연장(어항)	
그 외 토목비	인 구	
소학교비	교직원수	
중학교비	교직원수	
고등학교비	교직원수	
	학급수	
특수교육제학교비	교직원수	
	학급수	
그 외 교육비	인구	
	공립대학등 학생수	
	사립학교등 생도수	
생활보호비	정촌부 인구	
사회복지비	인구	
위생비	인구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 이상 인구	
	74세 이상 인구	
노동비	인구	
농업행정비	농가수	
임야행정비	공유이외 임야면적	
	공유임야 면적	
수산행정비	수산업자수	
상공행정비	인 구	
징세비	세대수	
은급(恩給)비	은급수급권자 수	
기획진흥비	인 구	
그 외 제비용	인 구	
투자경비	도로교량비	도로의 연장
	항만비	외곽시설의 연장(항만)
		외곽시설의 연장(어항)
	하천비	하천 연장
	고등학교비	생도수
	특수교육제학교비	학급수
	사회복지비	인구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이상인구
농업행정비	경지 면적	
임야행정비	임야 면적	
그 외 제비용	인구	
	면적	

1 개별산정경비(종래형)

비목	측정단위
경찰비	경찰직원수
도로교량비	도로의 면적
	도로의 연장
하천비	하천의 연장
항만비	계류시설 연장(항만)
	외곽시설 연장(항만)
	계류시설 연장(어항)
	외곽시설 연장(어항)
그 외 토목비	인 구
소학교비	교직원 수
중학교비	교직원 수
고등학교비	교직원 수
	생도수
특별지원학교비	교직원수
	학급수
그 외의 교육비	인구
	공립대학등학생수
	사립학교등생도수
생활보호비	정촌부인구
사회복지비	인구
위생비	인구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 이상 인구
	74세 이상 인구
노동비	인 구
농업 행정비	농가수
임야행정비	공유이외의 임야의면적
	공유임야의 면적
수산행정비	수산업자수
상공행정비	인 구
징세비	세대수
은 급 비	은급수급권자수
지역진흥비	인 구

2 포괄산정경비(신형)

인	구
면	적

① 시정촌분

2006년도

	비목	측정단위	
경 상 경 비	소방비	인구	
	도로교량비	도로 면적	
	항만비	계류시설 연장(항만) 계류시설 연장(어항)	
	도시계획비	도시계획구역의 인구	
	공원비	인구 도시공원 면적	
	하수도비	인구	
	그 외 토목비	인구	
	소학교비	아동수	
		학급수	
		학교수	
	중학교비	생도수	
		학급수	
		학교수	
	고등학교비	교직원수	
		생도수	
	그 외 그 외 교육비	인구	
		유치원 유아수	
	생활보호비	시부 인구	
	사회복지비	인구	
	보건위생비	인구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 이상 인구	
		74세 이상 인구	
	청소비	인 구	
	농업행정비	농 가 수	
	상공행정비	인 구	
	그 외 산업경제비	임업,수산업 및 광업 종업자수	
	징세비	세대수	
	호적주민기본대장비	호적수 세대수	
	기획진흥비	인구	
	그 외 제비용	인구	
	투 자 경 비	도로교량비	도로 연장
		항만비	외곽시설의 연장(항만) 외곽시설의 연장(어항)
		도시계획비	도시계획구역의 인구
공원비		인구	
하수도비		인구	
그 외 토목비		인구	
소학교비		학급수	
중학교비		학급수	
고등학교비		생도수	
그외교육비		인구	
사회복지비		인구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이상인구	
청소비		인구	
농업행정비		농가수	
그외산업경제비		임업,수산업 및 광업 종업자수	
기획진흥비		인구	
그 외 제비용		인구 면적	

2007년도

1 개별산정경비(종래형)

비목	측정단위
소방비	인구
도로교량비	도로 면적
	도로 연장
항만비	계류시설 연장(항만)
	외곽시설 연장(항만)
	계류시설 연장(어항)
	외곽시설 연장(어항)
도시계획비	도시계획구역의 인구
공원비	인구
	도시공원 면적
소학교비	아동수
	학급수
	학교수
중학교비	생도수
	학급수
	학교수
고등학교비	교직원수
	생도수
그 외 교육비	인구
	유치원 유아수
생활보호비	시부 인구
사회복지비	인구
보건위생비	인구
고령자보건복지비	65세 이상 인구
	75세 이상 인구
청소비	인구
농업행정비	농가수
임야수산행정비	임업 및 수산업 종업자수
상공행정비	인구
징세비	세대수
호적주민기본대장비	호적수 세대수
지역진흥비	인구 면적

2 포괄산정경비(신형)

인	구
면	적

6. 지방특례교부금 등의 결정에 대하여

○ 지방특례교부금 등의 내역

(단위: 억엔, %)

구분	2007년도(A)	2006년도(B)	신장률 A/B - 1
도도부현	1,783	2,809	▲36.5
· 지방특례교부금	560	352	59.1
· 특별교부금	1,223	-	모두 증가
· 감세보전특례교부금	-	2,457	모두 감소
시정촌	1,337	5,351	▲75.0
· 지방특례교부금	560	352	59.1
· 특별교부금	777	-	모두 증가
· 감세보전특례교부금	-	4,999	모두 감소
합계	3,120	8,160	▲61.8
· 지방특례교부금	1,120	704	59.1
· 특별교부금	2,000	-	모두 증가
· 감세보전특례교부금	-	7,456	모두 감소

○ 지방특례교부금 등의 개요

- 지방특례교부금 : 2006년도 및 2007년도 아동수당 제도 확충에 따른 지방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각 지방공공단체의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6학년생까지의 아동 수 및 아동수당 인상 대상 아동수(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3세미만의 아동 중에 제 1자녀 및 제2자녀 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함
- 특별교부금 : 항구적인 감세로 인한 지방세 감수의 일부를 보전하는 감세보전특례교부금이 2008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됨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교부하는 것으로 각 지방공공단체의 감수예정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 * 이들은 보통교부세의 교부여부와 상관없이 전 자치단체가 교부대상이 됨

7. 2007년도 임시재정대책채 발행가능액에 대하여

○ 임시재정대책채 발행 가능액의 내역

(단위: 억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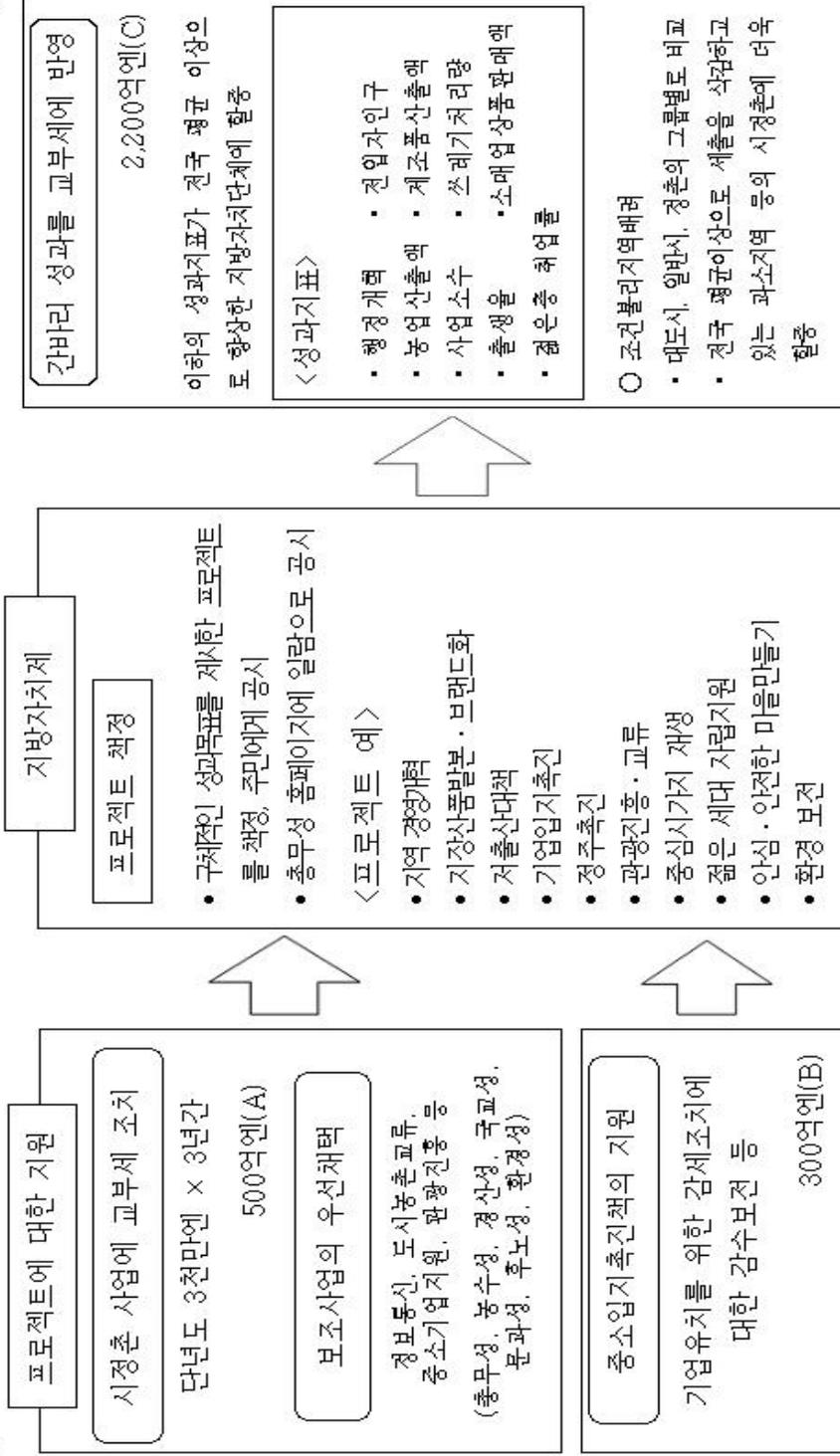
구분	2007년도 A	2006년도 B	신장율 A/B - 1
도도부현	13,150	14,536	△9.5
시정촌	13,150	14,536	△9.5
합계	26,300	29,072	△9.5

- 임시재정대책채의 개요
 - 지방재원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 지방재정법 제5조 특례로서 발행되는 것(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도 똑같이 발행). 또한, 그 원리상환금에 대해서는 익년도 이후의 기준재정수요액에 전액 산입함
- 임시재정대책채 발행가능액의 산정방법
 - 발행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정해진 [단가] 에 [각 지방공공단체의 인구] 및 [보정계수] 를 곱하여 산출

간바루 지방응원 프로그램 개요

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한 지방이 자유롭게 독자적인 시책을 전개함으로 「매력있는 지방」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방 독자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진화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조치를 강구함

교부세 조차액
3,000억원 정도
(A)+(B)+(C)



간바루 지방응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1. 목

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한 지방이 자유롭게 독자적인 시책을 전개함으로써 「매력있는 지방」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방 특자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등의 지

참고) 총리대신소신표명

지방의 활력이 없으면 국가의 활력도 없음. 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한 지방이 자유롭게 독자적인 시책을 전개함으로써 「매력있는 지방」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 정비를 포함하여 지방분권을 추진함. 지혜와 공부에 진념하는 지방 실현을 위해 지원을 함. 지장산품 발굴, 브랜딩화, 저출산대책 강구, 외국기업 유치 등에 대하여 그 지방 특자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조치를 새롭게 강구하는 「간바루지방응원프로그램」을 내년도부터 시작함

2. 응원프로그램의 기본적인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프로젝트 책정,

-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프로젝트(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제시)를 책정, 주민에 공표
- 총무성은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를 총무성 홈페이지 지 상에 공표
- 프로젝트 모집연도는 2007년도~2009년도의 3년간

(2) 지방교부세에 의한 지원조치(3,000억엔정도(2007년도 2,700억엔정도))

① 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한 지원

시정촌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경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조치(500억엔정도) 각 시정촌의 단년도 상한액은 3,000만엔에 아래의 재정력 보정계수를 곱한 수치. 3년간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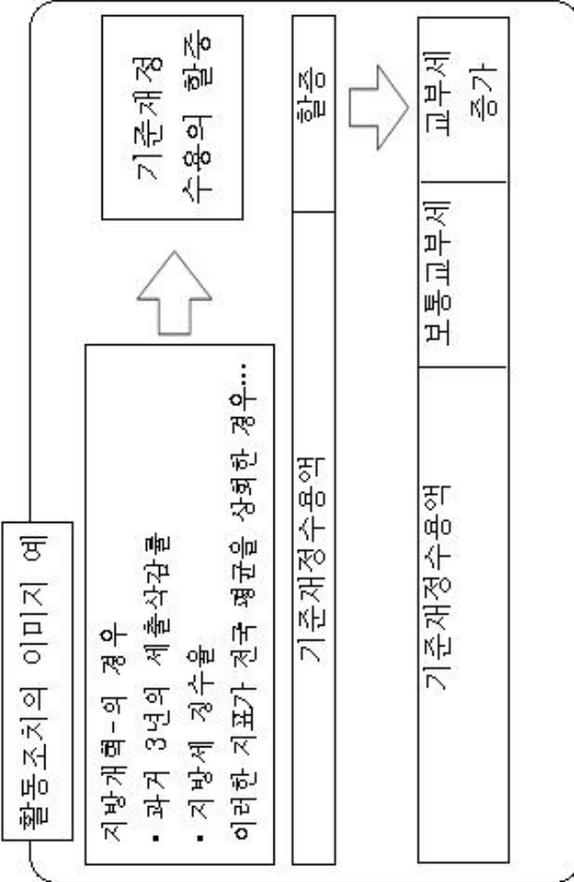
재정력지표	1.0 이상	0.8이상 1.0미만	0.8미만
재정력보정계수	0.05	0.75	1.00

② 「간바리」 성과에 대한 지원

아래의 성과지표가 전국 평균이상으로 향상한 시정촌도도부현에 대해 보통교부세의 할증조치(2,200억엔정도)

- 행정개혁
- 농업산출액
- 계도품출하액
- 사업소수
- 출생률
- 전입지 인구
- 소액창업포
- 젊은층 취업률
- 쓰레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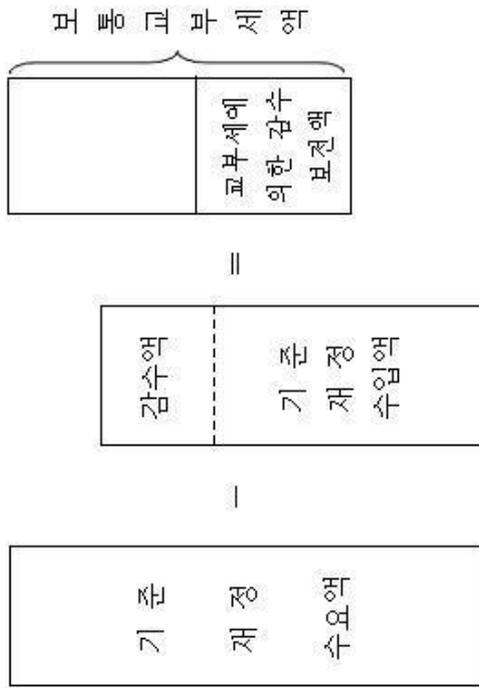
- 할증조치의 기본적인 생각
 - 각 성과지표의 변화율이 전국평균이상의 단체를 할증
 - 조건불리지역의 배려
 - 「지정도시등」· 「일반시」· 「정촌」의 그룹별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전국평균이상 단체를 할증
 - 전국 평균이상으로 세출을 삭감하고 있는 과소나 도지역 등의 시정촌에 더욱 할증
 - 「과거의 간바리」를 반영
- 성과지표 변화율이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경우에도 성과 지표의 절대치가 전국평균보다 양호한 경우는 할증



③ 기업입지촉진법에 기초한 지방교부세조치(300억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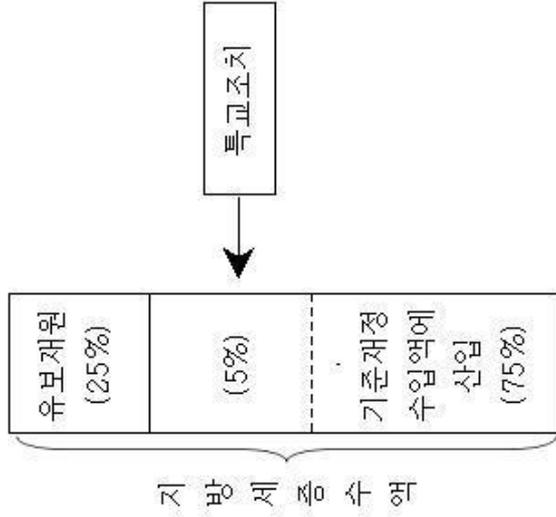
1. 감수보전조치(보통교부세)

기업입지계획에 따른 기업입지 사업자에 대하여도 도부현(재정력지수 0.46미만), 시정촌(동 0.67미만)이 지방세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 하는 경우에 보통교부세에 의한 감수액 보전



2. 세수입에 대한 조치(특별교부세)

기업입지계획 등에 따른 기업입지·사업고도화하는 사업자에 의한 시정촌의 세수증대에 대하여, 그 5% 상당분의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특별교부세로 조치



(3) 그 외의 지원조치

총무성 홈페이지 상에 공표된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보통신관계시책에 관한 보조사업의 우선채택 등에 대한 배려